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1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사업유형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인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기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상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 (근로자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 • (신규채용)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선정심사 점수 차등적용	개소당 최대 2억
창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신규 기업 설립 시, 투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 등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5억까지 지원 가능 		개소당 최대 3억

* [상시근로자] 월 근무일이 16일 이상으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지원방식 및 고용목표인원

사업유형	지원내용	지급시기	고용목표인원
인증형	• 고령친화환경 투자비(최대 1억)	지정연도(투자비)	5명 이상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1차 년도(인당 300만) 2차 년도(인당 300만)	
창업형	• 초기투자비(최대 2억)	지정연도(투자비)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1차 년도(인당 300만) 2차 년도(인당 300만)	

○ 지원방식 세부내용

- (교부기간) 3년간 교부(지정연도, 1~2차년도)

※ (지정연도) 투자비 100% (1차 년도) 고용인원×300만원, (2차 년도) 고용인원×300만)

- (교부방식) 지정연도는 대응투자 이행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교부, 1차, 2차 년도 이행계약서 상 고용목표인원*에 따라 교부

* 목표 미달성 시 미달성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금 환수(50% 미만 달성 시 계약해지)

- (고용인원 산정 기준)

- (공통)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 지원내용

- (공통) 고령자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비용
 - (공통)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 (공통)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증,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 (공통)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 (공통)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등
 - (창업형) 신규 기업 설립을 위한 제반 비용
 - (창업형)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의 경우 신규 채용 고령자 인건비 지원(지원 금액의 20% 이내)
- ※ 중앙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한 경우 10% 이내 추가집행 가능

II. 추진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공고 공모 계획서 신청 및 접수 	'24. 1. 8.(월) ~ 6. 28.(금)
1차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 서류 1차 심사 진행 * 공모 시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탈락 처리 	매월 접수 마감 이후 2주일 이내
2차 심사 (최종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 2차(선정) 심사 진행 * (대상) 신청기업 중 1차 심사 합격 기업 * (내용) 기업별 사업계획내용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1차 심사 종료 이후 2주일 이내
공모 선정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리집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 (누리집 주소)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www.kordi.or.kr 	2차 심사 종료 이후 1주일 이내
기업설립 (계약체결) 및 보조금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계약(1차) 체결 선정기업 대표(담당자) 기본교육* 추진 * (교육내용) 사업이해, 경영관리(회계·노무·법률) 기업 설립(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등) 이행계약(2차) 체결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이행계약(1차) 선정 후 30일 이내 (기업설립) 이행계약(1차) 후 90일 이내 (이행계약(2차) 기업설립 후 (보조금지급) 이행계약(2차) 후

※ 월별 공모세부 일정은 참고자료 1. 참조(공모는 당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II. 세부 추진내용

□ 신청자격

○ 공통 신청자격

신청가능 요건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기업 또는 단체 ✓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	--

- (자격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사업운영 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②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단,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시, 사업운영기간 및 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

③ (근로자 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

* 전년도에 6개월 이상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

※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유형별 신청자격

- (인증형) 전년도 상시 근로자의* 5%이상(최소 5명)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하고자 하는 기업(인력파견 유사업종 지원 제외**)

* [전년도 상시근로자] 전년도 12월의 근무일이 16일 이상으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2월이 5% 미만일 경우 조건이 충족된 달의 자료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에 인력파견업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서 인력 파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참여 제한

※ 개인사업자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법인 전환 시 신설 법인의 자격 기준은 사업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으로 같음함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일 이후 고용한 고령자(만 60세 이상)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에 한해 실적 인정

- (창업형)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 신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

□ 대응투자

- (대응투자 이행)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법인)는 직접 또는 다른 기관(기업)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최소 30% 투자 시 득점 가능) 이상을 대응투자 하여야 함

※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 심사 점수 차등 적용 (**심사 기준 붙임자료1. 참조**)

[대응투자 인정·집행기준]

- 신청기관이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 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정부)에서 무상 제공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 (단, 소유권 이전 시 전액 인정)
 -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 (감정가액 환산적용)
- 대응투자 이행완료 확인 후 예산지원 (선 대응투자 → 후 예산지원)

□ 신청제한 요건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 부터 사업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법인이나 그 법인 대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를 받은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및 법정 관리중인 경우
 - 휴·폐업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계절적 수요업체, 소비 향락업체, 단단계 판매업,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시설,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이후 자진 포기한 기업의 경우, 자진포기일 기준으로 동일기업 및 동일 대표자 명의로 익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지원 불가
- 관리기간 동안 인건비 누적지급총액이 보조금지급액을 초과하지 않고 관리 종료한 고령자친화기업은 관리 기간 종료 이후 3년간 동일 대표자 명의로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신청 불가

□ 제출서류 및 제출처

○ 공통 제출서류

-
- 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1부
(서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인권보호서약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접수일 기준)
 - 법인 재무제표 당기, 전기(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 보험 완납 납부증명서 1부 (접수일 기준)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필수)
 - 컨소시엄의 경우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비율(해당 시)
 - 관리 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 제출
 - * 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 급여지원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인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 노무법인 발급 확인서 등)•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
창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투자 관련 증빙 자료(현금 및 부동산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모서류 제출처

- (제출기간) '24. 1. 8.(월) ~ 6. 2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방문제출 시 18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제출 시 매월 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 이메일 제출 불가)
 -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1부(1권으로 합철), CD(또는 USB) 제출
- (제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대표번호 : 1833-7128)

권역	제출처	연락처	담당자
서울·강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7 와이즈타워 19층 민간일자리통합지원센터	02-6731-6119 02-6731-6128	경영 컨설턴트
부산·울산 경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거제1동 46-4) 주성산빌딩 3층	070-4372-3065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3층	070-4736-7093 070-7875-2477	
경기·인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7 와이즈타워 19층 민간일자리통합지원센터	02-6731-6117 02-6731-6118	
광주·전남 전북·제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중흥동 700-5) SRB빌딩 6층	062-714-1293 062-525-5782	
대전·충남 충북·세종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	070-5118-2218 070-8795-4022	

IV. 공모 심사 및 선정

□ 1차 심사

- (심사시기) 공모 기간 중 신청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회 진행
- (심사방법)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 (인증형) 현장심사 필수, (창업형) 필요시 현장심사
- (심사기준) 1차 평가(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 (평가지표) 붙임1 참조
- (결과통보) 홈페이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 및 1차 평가 통과 기관(업) 개별 통보

□ 최종(2차) 심사

- (중앙심의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관련 외부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
- (심사방법) 기업제출 사업계획내용 평가

< 신청기관 발표평가 >

- 2차 심사는 신청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기관별로 제안발표(PT)후 심사 진행
- 발표시간은 10분~15분 이내,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15장 이내
- 제안사업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선정(70점 미만 탈락)

- (평가지표) 붙임1 참조
- (선정방법)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 2차 평가(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 (결과통보) 홈페이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 및 기관(업) 개별 통보

V.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안내” 등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1833-7128) 문의 요망

<참고 1> 월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세부일정(안)

<참고 2> 고령친화 환경 세부 투자 기준(안)

<붙임 1> 심사기준 및 지표설명

<붙임 2>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

<붙임 3>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1차 심사 결과표

<붙임 4>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1차 심사 검토의견서

<붙임 5>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2차 심사(중앙심의위원회) 심사평가표

참고1**월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세부일정(안)**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3월	접수기간	'24. 1. 8.(월) ~ '24. 3. 29.(금)
	1차 심사	'24. 4. 8.(월) ~ '24. 4. 12.(금)
	2차 심사(최종 심사)	'24. 4. 22.(월) ~ '24. 4. 26.(금)
	공모 선정 통보	~ '24. 5. 3.(금)
4~6월	접수기간	'24. 4. 1.(월) ~ '24. 6. 28.(금)
	1차 심사	'24. 7. 8.(월) ~ '22. 7. 12.(금)
	2차 심사(최종 심사)	'24. 7. 22(월) ~ '22. 7. 26.(금)
	공모 선정 통보	~ '24. 8. 2(금)

※ 세부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고2

고령친화 환경 투자비 세부기준(안)

- 고령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실 개보수 및 휴게실 보수·설치,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등 포함
 - *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일반적인 노후시설 및 장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는 가능)
-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수적인 공사(도배장판 등 마감공사) 가능
- 고령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 등

구분	내용
신체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운반대차 제공◦ 중량물 취급 시 비슷한 높이에서 옮길 수 있도록 작업설비 개선◦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설비 구축
보조기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력부하가 큰 경우에는 카트 등 간이운반기구 제공◦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지 않도록 의자 또는 보조기구 제공
사고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 장치 설치◦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 제공◦ 경고표시판 설치◦ 작업장 및 통로에 밝은 조명 설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PC,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고령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심사기준 및 지표 설명

□ **평가 기준**

○ 중앙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내용, 수행 능력(기업 재무 건전성평가, 사업화능력평가), 사업계획, 사업효과 등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평가

- (1차 심사) 서면 평가 및 현장평가

※ (인증형) 현장심사 필수, (창업형) 필요시 현장심사

- (2차 심사) 사업 제안발표 및 최종 선정심사

□ **평가 지표**

구분	심사영역	세부기준	배점									
1차 심사	수행능력 (영리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건전성(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15), 유동비율(15), 매출액증가율(15), 매출액 영업이익률(15) • 사업화능력(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개발 능력(10),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 기술 보유 여부(15), 사업화 인프라 보유(15) 	100점									
	수행능력 (비영리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능력(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개발 능력(25), 운용인력 전문성(25), 기술 성 보유(25), 사업화 인프라 보유(25) 	100점									
2차 심사	사업내용 (30점)	• 사업내용 적합성, 노인업무 적합성,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100점									
	사업계획 (30점)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효과 (25점)	• 고용창출 효과,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기대효과										
	대응투자 (15점)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 / 신청 보조금 * 1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대응투자 비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90% 이상</td> <td>15점</td> </tr> <tr> <td>70%이상 90%미만</td> <td>12점</td> </tr> <tr> <td>50%이상 70%미만</td> <td>9점</td> </tr> <tr> <td>30%이상 50%미만</td> <td>6점</td> </tr> </tbody> </table>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15점	70%이상 90%미만	12점	50%이상 70%미만	9점	30%이상 50%미만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15점											
70%이상 90%미만	12점											
50%이상 70%미만	9점											
30%이상 50%미만	6점											
가점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고령자 창업 여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형) 신청기업(관) 대표자가 만60세이상일 경우 - (창업형) 신설법인의 대표자가 만60세이상일 경우 	3점										

□ 선정 기준

- (1차 심사) 배점(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 (최종심사) 배점(100점)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산출

□ 단계별 심사 세부 기준

- 1차 심사 세부 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수행능력평가 ※ 영리기업용	기업 건정성 (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부채총계*100/자본총계)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증가율 ※ 평가기준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영업이익률 ※ 평가기준 : 전년도(영업이익*100)/매출액 	15점
	사업화 능력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개발생산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 보유여부 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 운영인력 전문성, 보유기술 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 	15점
	합 계		
수행능력평가 ※ 비영리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 개발·생산설비 및 활용가능 외부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전담인력 보유 및 배정여부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인력 전문성 ※ 전문인력의 해당분야 국가 및 관련단체 자격증 보유, 평균 근속연수 등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성 보유 ※ 보유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활용성 		25점
	합 계		

○ 최종(2차)심사 세부 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사업내용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적합성 ※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업무 적합성 ※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10점										
사업계획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 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15점										
사업효과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효과 ※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 ※ 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5점										
대응투자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신청 보조금*100% 	15점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응투자 비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90% 이상</td> <td>15점</td> </tr> <tr> <td>70%이상 90%미만</td> <td>12점</td> </tr> <tr> <td>50%이상 70%미만</td> <td>9점</td> </tr> <tr> <td>30%이상 50%미만</td> <td>6점</td> </tr> </tbody> </table>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15점	70%이상 90%미만	12점	50%이상 70%미만	9점	30%이상 50%미만	6점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15점									
	70%이상 90%미만		12점									
50%이상 70%미만	9점											
30%이상 50%미만	6점											
가점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창업 여부 - (인증형) 신청기업(관) 대표자가 만 60세이상일 경우 - (창업형) 신설법인의 대표자를 만 60세이상일 경우* * 사업계획서 내에 해당 내용 기재 시 가점 인정 	3점										
합 계		100점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확인

※ 전문 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랜서 포함

※ 가점을 받은 기업에서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시 대표자가 만60세 이상인 자가 아니거나 개발원 사전승인 없이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이후 3년 내에 대표자를 만60세 미만인자로 변경 시 계약해지(※ 창업형은 사업계획서 내에 해당내용 기재 시 가점 적용)

[고령자친화기업 예산 편성 항목 및 내용]

비목	세목	세세목	e나라도움 보조세목
인건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 신규고용 고령자인건비(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창업형의 경우 편성 가능) 	인건비-보수
사업비	시설투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의 적합 작업 설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목적의 시설투자비 및 이에 필요한 수수료, 감정료 등 	건설비-시설비
	자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적합 작업장비 및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 취득 비용(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 ※ 차량 취득은 지양하며, 리스계약으로 임차비로 편성 ※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예산은 지정연도에만 편성 가능 	유형자산-자산취득비
	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작업 및 편의증진을 위한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고령자 고용유지 및 확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 ※ 보증금, 권리금으로는 편성/사용 불가 	운영비-임차료
	재료비 (창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재료비 구입비용 등 ※ 재료비 사용 시, 검수조서 구비 필수 	운영비-재료비
	교육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비용 자체교육 강사료 	운영비-기타운영비
	홍보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고령자 채용광고 포함) 	운영비-일반수용비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수도, 통신료 등 공공요금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근로자의 국내 출장경비 	여비-국내여비
	복리후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근로자 건강검진비, 백신 등 접종비용 	운영비-복리후생비
	기타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용 비품 및 집기 사업추진을 위한 내/외부 회의비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등 	운영비-일반수용비

- 1) 전문(관리)인력 인건비는 보조금 월 200만원, 대응투자금 월 300만원 이내로 편성하되, 예산 총액의 30% 이내로 편성
- 2) 창업형 해당 : 재료비 예산 총액의 10% 이내, 신규고용 고령자인건비는 예산 총액의 20% 이내로 편성
- 3) 관리운영비는 예산 총액의 10% 이내로 편성
 ※ 예산 총액의 기준은 보조금, 대응투자금 각각의 총액을 기준으로 함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1차 심사 결과표(영리용)

소 속		평가대상	
제출일자	년 월 일	담당자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점수	배점구간			
				15점	12점	9점	6점
기업 건정성 평가 (60점)	부채비율 (산식) 전년도(부채총계*100/자본총계)	15점		80% 미만	80~100% 미만	100~130% 미만	130% 이상
	유동비율 (산식)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15점		150% 이상	100~150% 미만	50~100% 미만	50% 미만
	매출액 증가율 (산식)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15점		20% 이상	10~20% 미만	3~10% 미만	3% 미만
	매출액 영업이익률 (산식) 전년도(영업이익*100/매출액)	15점		9% 이상	6~9% 미만	3~6% 미만	3% 미만
사업화 능력평가 (40점)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자체 개발·생산설비 및 활용가능 외 부설비 보유,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 전담인력 보유 및 배정여부)	10점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전문인력(자격) 확보 및 관련 기술 보유 (자격증 소지 및 경력(1년기준) 여부, 보유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등)	15점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사업화 인프라 보유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활용성)	15점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합 계 (100점 만점)				() 점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1차 심사 결과표(비영리용)

소 속		평가대상	
제출일자	년 월 일	담당자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점수	배점구간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사업화 능력평가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자체 개발·생산설비 및 활용가능 외부설비 보유, 사업화관련 전담부서·전담인력 보유 및 배정여부)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운영인력 전문성 (운영인력의 해당분야 국가 및 관련단체 자격증 보유, 평균근속연수 등)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기술성 보유 (보유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등)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사업화 인프라 보유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활용성)	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합 계 (100점 만점)				() 점				

1차 심사 검토의견서

가. 신청 개요

신청 기관	접 수 번 호						
	신 청 유 형	<input type="checkbox"/> 인증형 <input type="checkbox"/> 창업형					
	법 인 명		법 인 대 표				
	신청기관명		기 관 대 표				
	대응투자 기업(기관)명		기업(기관)대표				
	전 화		FAX				
	E - mail	※가급적 기관 메일주소 작성	설 립 일 자				
	주 소	(우: -)					
	홈 페이지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10자 이내)			(업종:)		
	총사업액	금	원정		(₩ 원)		
		보조금 신청금액	금	원정		(₩ 원)	
	대응투자 (천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소 계					
		현 금					
	간접투자	기 타					
		현 물					
	보조금 세부내역 (천원)	인건비	사업비 구성(보조금)				관리 운영비
			시설 투자비	자산 취득비	임차비	기타	
고용인원	○ 지정연도 이후 관리기간(5년) 내 고용창출 성과목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60세 이상 고용창출 목표						

나. 기업 및 단체 현황

구분	세부 내역	검토 내용(예시)
기업 및 단체 현황	신청 기관(기업) 법인유무	■
	대응투자 규모의 적정성	■ 신청유형 : ■ 대응투자금액 : (보조금 대비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 해당 여부	■
	신청법인의 결격사유 여부	■
	최소 고용인원 목표, 보조금 신청 금액 적정성	■ 업종 : ■ 고용목표 : 으로 최소고용인원 목표 준수 ■ 보조금 신청금액 :
	신청서 및 부속서류,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
	법인 재무제표(기업의 경우)	■
	고친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비율(컨소시엄의 경우)	■
	관리인력 인건비 증빙자료(해당 시)	■
	고친 사업장 설립형태 증빙	■
성명, 생년월일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 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	

다. 평가 참고의견

구분	평 가 지 표	검토 내용(예시)
사업 내용	사업내용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기술, 00특허, 판매채널, 00파트너십, 00제휴, 자체 브랜드 등 비즈니스 모델관련 기업 내외부의 핵심자원이 존재 ■ A사의 대응투자로 안정적인 설비확보 및 판매채널 확보가 가능해 보이며 원재료의 구매부터 최종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기업 내부에서 수행,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약 1주안에 상품화 및 배송)효율적 기업활동 및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득력이 있음
	노인업무 적합성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 스키장비 등 단순물품을 보관(입출고 업무) 및 관리하는(오염구김방지)업무로 업무 난이도가 고령자에게 적합하며 직무교육 또한 자체시스템을(D사연계)통해 운영예정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쟁력확보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키는지,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업계와 달리 디자인 생산과정 유통과정을 기업내부로 수직 통합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자체 물류시스템을 갖추어 생산과 납품 지연, 품질불량과 같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자체브랜드를 통한 직영매장 판매로 수익을 창출. 수직계열화를 통해 기획단계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빠른 의사결정과 시간단축을 통해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임
사업 계획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장 및 상품 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00업체가 공구를 구매하는 목적은 장비의 소유가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라는 점에 착안, 00분야를 주요시장으로 범용화된 공구를 “장기임대 및 유지보수” 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제시 ■ A협회, B기업,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시장조사 과정을 거쳐 결과의 신뢰도 높음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구체적으로 원가의 구조와 마진폭, 매출의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재고, 납기, 자산회전 등의 기업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현장에 공구대여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연간 00억 추정), 또한 임대장비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연간 00억 추정)수익구조로 관련매출과 예상손익계산이 타당해 보임

구분	평 가 지 표	검토 내용(예시)
		<p>- 상품재고관리는 온라인을 통해 양방향으로 (OO업체가 온라인으로 임대장비를 확인) 이루어지며 이렇게 추적된 자료는 다시 공구관리 서비스 및 장비구매 등 예산집행의 기본자료로 사용되어짐</p> <p>■ 매출예상치가 현실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손익계산의 추정치가 비현실적</p>
사업 효과	<p>고용창출 효과 (신규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p>	<p>■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의류, 스키장비 등 보관관리)’를 제공하는 B사의 사업모델은 회원들의 물품을 보관 및 관리하는 파트에서 다수의 고용창출(월평균 OO명)이 이루어지며</p> <p>- 사업확장 단계에서 회원을 상대로 픽업서비스(화수 및 배달)제공, 추가적인 고용창출(월평균 OO명)과 부가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설득력이 있음</p>
	<p>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 (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p>	<p>■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OO제품을 몇가지 제도나 혜택을(재구매)통해 고객들이 스스로 제품유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전략을 통해 주력사업과 부가사업 모두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해 보임</p>
	<p>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p>	<p>■ 지역사회 빈민계층에 OO를 제공하고 화수된 구형OO에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C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사회경제적 영역으로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해보임</p>
대응 투자	<p>대응투자 규모의 적합성 (예산신청액 대비 분담률, 자금유입 경로 등)</p>	<p>■ 대응투자 내역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대응투자 : - 현물 대응투자 :
신용 정보	<p>신청기업(기관) 신용정보 평가</p> <p>가. 채무불이행 이력</p> <p>나. 소송정보 (소송계류 상태)</p> <p>다. 법정관리/화의 이력</p> <p>라. 당좌거래정지 이력</p> <p>※ 해당내역이 있을 경우 상세 기술</p>	

고령자친화기업 최종심사 평가표

소 속		평가대상	
평가일자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배점구간				점수
			A	B	C	D	
사업 내용 (30점)	사업내용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 계획과의 부합성 등)	10점	10	8	6	4	
	노인업무 적합성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10점	10	8	6	4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쟁력확보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10점	10	8	6	4	
사업 계획 (30점)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15점	15	12	9	6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15점	15	12	9	6	
사업 효과 (25점)	고용창출 효과 (신규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10점	10	8	6	4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 (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 효과 등)	10점	10	8	6	4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5점	5	4	3	2	
대응 투자 (15점)	대응투자 적합성	15점	15	12	9	6	
가점 (3점)	고령자 창업 여부	3점	해당 시 3점, 미해당 시 0점				
합 계			() 점				